어 업 권 등 의 보 상 청 구 서						처리기간			
(제51조제1항 관련)					시·군·구10일				
신 청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		_			
인	③ 주 소	시·도	시·군·구	읍·면·	동	리·동	-	번지	
어 업 권 또 는 공작물의 표시		④ 어 업 의 종류	어업	⑤ 면	허 번	호	제	호	
		⑥ 공작물의 종류		⑦ 공작물의		규모		m²	
⑧ 처 분 사 항			9 처 분	일 자		년	월	일	
손실의내용	⑩ 손 해 액								
	① 내 역								
	<ul><li>② 산 출</li><li>근 거</li></ul>								
③ 손실액과 내역 및 산출방법									
⑭ 청구보상금액		일금				원정			
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 리에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 등의 손실에 대한 보 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					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	
구 비 서 류  1.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※ 기재요령: ①~③의 란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(법인 또는 단체포함)도 포함하여 기재한다.						2	수 수 료		
							600원		

